



소화설비할인 제도 및 우량할인 제도와 언더라이팅



김강현
LG화재
화재특종업무팀 부장

1. 화재에 대하여

화재 위험을 담보받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당면한 위험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는지에 가장 관심이 많아야 할 것이나 대부분의 보험계약자들은 실제로 있어 자신이 낸 보험료가 정당한 것인지, 나아가서는 더 싸게 많은 담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는 자유경쟁체제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많은 보험계약자, 특히 기업에서 보험 가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동종 경쟁 업체보다

자신의 회사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지는 않은지 무척 궁금해 하고, 그 경쟁 업체보다 더 적은 보험료를 내는(보다 엄밀히 말하면 더 낮은 요율을 적용받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업무 성과를 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계약자들은 보다 경쟁적인 보험요율을 제시하는 보험회사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험계약자의 노력은 당연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자칫 보험에 왜 가입을 하는지, 실제 자신이 처한 위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를 볼 때 필자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또 많은 보험계약자들은 자신이 처한 위험은 다른 사람이 처한 위험과는 다르다는 점, 그 위험을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은 그 위험을 관리하는 의식 자체가 남들과는 다르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보험요율의 차별화를 적극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보험계약자를 접할 때마다 필자 역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험요율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화재보험 기본요율체계는 동질위험 집단별로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는 등급요율체계로 보험계약자의 개별 특성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요율 제도는 아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 개별특성을 반영하는 성과요율체계로 된 할인·할증 체계도 갖추고 있다. 그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인접 건물과 보험가입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에 따라 일정 부분을 할인하는 공지(空地)할인, 건물에 설치된 소화설비 시설에 따라 일정 부분을 할인하는 소화설비 할인,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이며 손해율이 양호한 공장에 대해서 개별 특성을 반영하는 우량할인 등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화재보험의 할인제도 특성을 이해하고, 이 제도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관리를 시행한다면 보험료 절감과 위험 감소라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화재보험의 할인제도 중 가장 중요하고 많은 보험료 절감을 할 수 있는 소화설비 할인제도와 우량할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2. 소화설비할인 제도

화재 발생 시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가장 훌륭한 방법은 화재 발견 초기에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므로 초기 진압을 위한 소화설비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요성을 반영하여 화재보험에서는 보험가입 건물에 설치된 소화설비에 따라 화재 기본요율에 작게는 3%에서 60%까지 할인을 하고 있다.

각종 소화설비 장치는 국내 제반 규정에 따라 건물 신축이나 입주 당시에 각 건물주 및 사업주에 의해 설치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소화설비 장치는 설치보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유지 관리 및 실제 사용 가능성 여부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실제에 있어서 각종 소화설비 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과는 아쉽게도 매우 실망스럽다. 2002회계연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수행한 소화설비 할인검사 결과 자료를 보면 총 검사실시 건물 16,801건 가운데 14.1%인 2,363건만이 적합 판정을 받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화설비할인 제도는 소화설비 장치가 설치만 되어 있다고 보험요율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화설비 할인율은 <표 1>에서 보드시피 옥외소화전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총 9개 설비에 대해 그 진화 효과별로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보험가입 건물뿐만 아니라 그 수용 동산까지도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 할인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소



특집 | 화재보험 요율의 할인제도

화설비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일반 보험계약자는 그 적합 설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직접 설치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그 할인율을 결정하고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는 특수건물에 대해 매년 안전점

〈표 1〉 화재보험의 소화설비 할인율

| 소화설비의 종류 | | 할인율 | | | |
|--------------------|--------------|--------|------------------|-----|-----|
| 0 | 소화기 | 3% | | | |
| 1 | 목외소화전 설비 | 갑 | 15% | | |
| | | 을 | 12% | | |
| | | 병 | 8% | | |
| 2 | 옥내소화전 설비 | 갑 | 10% | | |
| | | 을 | 8% | | |
| | | 병 | 5% | | |
| 3 | 소방펌프 자동차 | 15% | | | |
| 4 | 자동화재 탐지설비 | 8% | | | |
| 5 | 자동화재 속보설비 | 5% | | | |
| 6 | 스프링클러설비 | 1 | 모든 시설이 규정에 적합할 때 | 60% | |
| | | 2 | 미달 규정의 수가 1개일 때 | 50% | |
| | | | 미달 규정의 수가 2개일 때 | 40% | |
| | | | 미달 규정의 수가 3개일 때 | 30% | |
| | | | 미달 규정의 수가 4개일 때 | 20% | |
| 미달 규정의 수가 5개 이상일 때 | 15% | | | | |
| 7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전역방출방식 | 자동 | 20% | |
| | | 수동 | 10% | | |
| 8 | 포소화설비 | 5~18% | | | |
| 9 | 할론 1301 소화설비 | 1 | 할론1301 전역방출 방식 | 자동 | 20% |
| | | | | 수동 | 10% |
| | | 2 | 청정소화약제 전역방출 방식 | 자동 | 20% |
| | | | | 수동 | 10% |

검을 실시하므로 안전점검 시 소화설비할인 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비특수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소유자나 보험회사가 소화설비에 대한 검사를 신청할 경우에만 소화설비할인 점검을 하고 있다. 따라서 비특수건물을 소유한 보험계약자는 해당 건물에 소화설비 시설을 하고 적정한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시 반드시 소화설비할인 검사를 요청하여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소화설비 시설은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중요하므로 소화설비 시설 점검도 한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매년 적정성 여부를 검사받아야 한다.

실제 화재보험의 소화설비할인은 최고 60%까지 할인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다른 할인보다 가장 많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화재 초기 진화에 가장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도, 보험계약자 관심 부족 또는 오동작 우려에 따른 적절한 유지 보수가 되지 않아 아쉽게도 그 할인을 적용받는 계약자는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실제 창고 건물이나 백화점 등의 건물에서 스프링클러 오동작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기껏 설치해놓은 설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화재보험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는 “스프링클러 누출 손해 담보 특약”이 있다는 것이다.

3. 우량물건할인 제도

산업이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각 기업성 물건의

규모는 커지고, 그 위험의 형태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기존의 동질위험별로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는 등급요율 체계로는 보험계약자 개별 계약의 특성을 반영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우량할인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성 물건을 대상으로 과거의 화재보험 손해 실적과 화재위험 정도, 위험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부분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성과요율제도이다. 본 제도는 1993년 당시 화재보험 요율체계의 합리적 개선과 국문요율과 영문요율과의 이중구조 해소, 위험관리 기능의 활성화 및 요율자율화 추진 등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본 제도는 모든 화재보험 물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장물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이는 모든 물건에 대해 개별 특성을 파악하여 차별적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오히려 사업비만 증가하여 보험료만 오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제도는 국문요율과 영문요율과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인데, 당시 재보험자로부터 개별 특성을 반영하여 구득한 영문요율의 사용은 일정 규모 이상인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개별위험에 대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계약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만이 가능한 일하기에 동 제도도 일정 규모, 즉 증권 당 보험가입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장물건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보다 자세히 우량물건할인 제도가 적용 가능한 대

상을 살펴보면 우선 동일공장 구내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보험가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동일 구내의 과거 5년간 화재보험 계약의 평균 손해율이 40%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동일 구내의 화재보험 가입 경과년수가 계속해서 만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동 할인은 일반공장, 석유화학공장에 따라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데 할인율은 최저 2%에서 최고 25%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특수건물인 경우에는 이미 특수건물할인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10%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우량할인 산출기준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손해실적특점과 산출표(표 2 참조) 총 득점에 따라 결정된다. 손해실적특점은 과거 5년간의 손해율과 손해발생회수에 따라 최고 5년간의 손해율 및 손해발생회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손해가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최고 1,000점까지 얻을 수 있다.

우량할인 산출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반 공장 과 석유화학공장과는 별도의 산출표를 사용하는데 일반 공장의 산출표는 〈표 2〉와 같다. 일반 공장 산출표 상의 각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고, 최고 1,500점까지 얻을 수 있다.

가. 구내 연소위험

각 공장동 간의 이격거리를 측정하는 것인데 공지할인과 유사한 성격으로 공장간 연소확대 위험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

나. 위험물 사용

공정 상 위험물 사용 시 사용용기 및 보관용기의 상태에 대한 점검을 통한 위험물로 인한 손해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

다. 전기시설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선, 배선상태 및 절연저항 규정치의 판단은 전기설비에 의한 화재발생 위험도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

라. 구조비

구내 건물의 우량 건물 구조 비중에 대한 평가로 실제 발생손해액의 경감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항목

〈표 2〉 우량할인율 산출표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점수 | 기입사항 |
|-----------|--|---------|--|
| 1. 구내연소위험 | 구내 각 건물(시설)간의 평균거리가 | 측정수 : 개 | |
| | 가. 10m이상인 경우 | 100 | 실측거리합계 : m |
| | 나. 6m이상 10m 미만인 경우 | 50 | 구조계수 :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
| 2. 위험물사용 | 다. 6m미만인 경우 | 0 | 평균거리 : m |
| | 가. 공정상 취급되는 위험물의 사용용기가 안전용기이며 보관용기는 불연재로서 시건장치가 된 경우 또는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는 것 | 50 | 사용위험품종류 : |
| | 나. 기타 | 0 | 안전용기종류 : |
| 3. 전기시설 | 전선, 배선의 상태와 절연 저항측정치가 | | |
| | 가. 모두 기준 이상인 경우 | 100 | 전선배선 : <input type="checkbox"/> 기준이상 <input type="checkbox"/> 미달 |
| | 나.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50 | 절연저항 : M Ω |
| 4. 구조비 | 다. 모두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0 | |
| | 구조급수가 1급 및 2급인 건물의 합계면적에 대한 구내건물전체 합계 면적의 비율이 | | 1, 2급 해당건물 면적합계 : m ² |
| | 가. 60%이상인 경우 | 150 | 3, 4급 해당건물 면적합계 : m ² |
| 5. 위험구획 | 나. 40%이상 60%미만인 경우 | 100 | 구내건물 전체 합계면적 : m ² |
| | 다. 40%미만인 경우 | 0 | 비율 : (%) |
| | 연면적 1,000m ² 이상인 건물의 위험구획상태가 | | 자동식소화설비 설치면적×1/3 : m ² |
| 6. 톱리스크 | 가. 1.5이하인 경우 | 150 | 자동식소화설비 미설치면적 : m ² |
| | 나. 1.5초과 3이하인 경우 | 100 | 방화구획수(A) : 개소 |
| | 다. 3초과인 경우 | 0 | 계산치 : |
| 7. 경비상황 | 주야점검 시 | | <input type="checkbox"/> 순환시계, 감시장치, 페트를 |
| | 가. 순회시계 또는 기타 기계장치에 의하여 기록되는 경우 | 100 | 레코더 등의 기계장치 |
| | 나. 기타 | 0 | <input type="checkbox"/> 순회일지 |

| | | | |
|---------------|--|------|---|
| 8. 공설소방차 | 부근의 소방 용급수원이 충분한 수량을 보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가. 주행거리 2km이내에 소방펌프자동차 2대 이상을 보유한 상주 소방대가 있는 경우 | 150 | 소방대명 : <input type="checkbox"/> 상주 <input type="checkbox"/> 비상주 |
| | 나. 주행거리 4km이내에 소방펌프자동차 2대 이상을 보유한 상주 소방대가 있는 경우(주행거리 2km이내에 소방펌프자동차 2대 이상을 보유한 비상주 소방대가 있는 경우) | 100 | 주행거리 : 상 주 km 비상주 km |
| 9. 자동차 소화설비 | 다. 주행거리 6km이내에 소방펌프자동차 2대 이상을 보유한 상주 소방대가 있는 경우(주행거리 4km이내에 소방펌프자동차 2대 이상을 보유한 비상주소방대가 있는 경우) | 50 | 소방펌프자동차 |
| | 라. 기타 | 0 | 상 주 : 대 비상주 : 대 |
| | 가. 건물 총연면적의 50% 이상이 설치되어 있고 소화능력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100 | 총연면적 : m ² |
| 10. 옥내소화전 | 나. 건물총 연면적의 30%이상 50%미만이 설치되어 있고 소화능력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50 | 설치면적 : m ² |
| | 다. 기타 | 0 | 비 율 : (%) |
| | 가. 건물 총연면적의 80%이상이 설치되어 있고 방수압력과 방수량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 | 100 | 총연면적 : m ² |
| 11. 옥외소화전 | 나. 건물총 연면적의 50%이상이 설치되어 있고 방수압력과 방수량이 기준치의 80% 이상인 경우 | 50 | 설치면적 : m ² |
| | 다. 기타 | 0 | 비 율 : (%) |
| | 가. 건물 총연면적의 80% 이상이 설치되어 있고 방수압력과 방수량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 | 100 | 총연면적 : m ² |
| 12. 자동화재 탐지설비 | 나. 건물 총연면적의 60% 이상이 설치되어 있고 방수압력과 방수량이 기준치의 80% 이상인 경우 | 60 | 설치면적 : m ² |
| | 다. 건물 총연면적의 40% 이상이 설치되어 있고 방수압력과 방수량이 기준치의 80% 이상인 경우 | 30 | 비 율 : (%) |
| | 라. 기타 | 0 | 방수압력 : kg/cm ² |
| 13. 동력소방 펌프설비 | 가. 수원과 규격방수량이 기준치에 상인 경우 | 100 | 방 수 량 : ℓ/min |
| | 나. 수원과 규격방수량이 기준치에 미달되는 경우 | 50 | |
| | 다. 기타 | 0 | |
| 총 득 점 | | 1500 | |

마. 위험구획

건물 내 위험구획 실태에 대한 평가로 화재 확대 위험 판단

바. Top Risk

가장 큰 위험단위의 전체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비중으로 최대발생가능 손해액을 판단하고자하는 항목으로 보험회사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이다.

사. 경비상황

주야 시설 점검관리 실태 평가

아. 기타 소화설비

공설소방차, 자동식 소화설비, 옥내소화전, 옥외 소화전, 자동화재 탐지설비, 동력소방펌프설비 등의 성능평가로 화재 발생시 대처능력을 파악

석유화학공장에서는 이 밖에도 안전관리 담당부서 설치, 안전관리 프로그램의 가동여부 및 전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량할인을 산출은 소화설비할인과 마찬가지로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각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우량할인점검을 요청하면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보험가입 시 그 할인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동 할인도 소화설비할

인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매년 우량할인 점검을 받아야 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 최근에 각 보험회사는 사전에 해당 보험계약자의 공장에 대해 위험관리 Survey를 실시하고, 각종 개선사항 등을 미리 권고하고 개선토록 유도하여 더 많은 우량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한다. 이는 2002년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 각 손해보험회사에서 우량할인점검 요청한 총 4,852건 중 74.4%인 3,612건이 우량할인율을 적용받았으며, 이는 과거 2000년 2,701건보다 33.7% 증가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4. 맺음말

이상에서 간략하게나마 화재보험의 소화설비할인과 우량할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글을 통하여 본 할인제도에 대한 보험계약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고, 더 나아가 안전관리 및 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되었으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기업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보험을 통하여 회피하고, 또 그 보험료를 절감시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체계화된 안전관리 시스템의 운영이며, 그 무엇보다도 경영자 및 종업원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떠한 방재설비나 보험보다도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이며,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

참고 문헌

1. 한국화재보험협회, 안전점검결과분석(2002회계연도), 2003. 9
2.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 20년사, 2003. 12